# 학칙 개정(안)

## 가. 제안이유

- 1)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개편 정책에 따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(SCK),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(WCC) 사업이 종료되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·운영되게 되어 사업이 종료된 사업단은 폐지하고 새롭게 운영되는 사업의 사업단 신설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- 2) 강사위촉규정 폐지 및 강사인사규정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
- 3) 세부전공 및 특화전공 운영에 따른 방안 제시
- 4) 미등록제적에 따른 소정기한 정례화
- 5) 학사편입학 대상자의 학점인정 규정화

# 나. 주요내용

- 1) 특별사업기구 내 WCC사업단, 특성화사업단 삭제 및 혁신지원사업단 신설
- 2) 문구 수정(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수정)
- 3) 제31조(제적) 미등록제적에 독려 절차에 따른 정례화
- 4) 제32조(교육과정) : 학과별 세부전공 및 특화전공을 운영하며, 기타사항의 경우 교육과정 지침에 따름
- 5) 제34조(학점인정) : 학사편입학 자의 경우 취득학점 및 "종교와원불교" 인정여부의 규정화
- 6) 제46조(졸업) : 졸업 시 세부전공을 득하는 자의 최소한의 학점 규정화

#### 다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## 라. 참고사항

관계법령 :
 예산조치 :

3) 합 의:

4)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(별첨)

# 【별첨】학칙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(안)
제7조(조직) ①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, 기획조정처, 교무처, 입학관리처, 학생복지처, 대외협력처, 국제교류처, 취창업 지원처, 총무처, 산학협력단, 총장직속기구로 비서실, 평가 관리실 및 특별사업기구를 두며,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12. (생략) 13. 특별사업기구에는 LINC+사업단, <u>WOC사업단, 특성화사업단,</u> K-MOVE사업단, 창업교육단, NCS교육단 등을 둘 수 있다. ② ~ ⑤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 13 <u>혁신지원사업단,</u>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(안)
수, 조교수로 구분하며,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· 계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(생략)	
5. ~ 6. (생략) 제32조(교육과정) ① ~ ⑥ (생략) <신 설>  제34조(학점인정) ① ~ ⑪ (생략) <신 설>	5. ~ 6. (현행과 같음)  제32조(교육과정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② 학과별 세부전공을 운영 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 제34조(학점인정) ① ~ ⑪ (현행과 같음) ⑫ 학사편입학 학생은 취득학점 68학점을 인정한다. 단, 종교와 원불교(2학점 이상)를 이수한 경우 종교와 원불교 2학
제46조(졸업) ① ~ ⑤ (생략) <신 설>	점을 포함하여 70학점을 인정한다. 제46조(졸업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세부전공 이수기준(전공 이수학점 40학점 이상이며, 세부전공 이수학점 20학점 이상)을 충족하였을 경우 학위증서에 세부전공을 표기한다.
	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